## 国外事件

# 商標權侵害에 따른 停止 賠償責任

**日本 大阪地方裁判所 1976年 4月30日 判決**
(1973年 第5635號 商標權 侵害停止請求事件)

**1. 原 告**: 株式會社 피로비탄總本社
〃 피로비탄本社
쟈판푸즈株式會社

**2. 被 告**: 萩原乳業株式會社

**3. 判決主文**

被告는 피오비탄A의 標章을 붙인 乳酸菌飮料를 製造, 販賣하고 또는 판매를 위해 展示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原告 株式會社피로비탄本社 및 同 쟈판푸즈株式會社에 대하여 各 金43,500圓씩, 株式會社피로비탄總本社에 대해서는 金29,000圓과 위의 각 금액에 대하여 1973年 12月19日부터 完濟될 때까지 年 5%의 금액을 支拂하라.

원고들의 그 외의 請求를 棄却한다. 訴訟費用은 이를 2等分하여 그 半額을 원고의 負擔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判決은 원고의 勝訴部分에 限하여 假執行할 수가 있다.

**4. 訴訟事實**

原告 株式會社피로비탄總本社(以下 FX라 稱함)는 甲과 乙의 두가지 商標權者이다. X는 元來 원고 피로비탄본사(이하A라 부름)의 設立以來 갑의 商標權者로서 또 乙商標의 出願人으로서 乳酸菌飮料피로비탄의 製造販賣를 하고 있었으며 1970年 7月 總本社 X가 설립되었으므로 本件商標를 讓渡하여 이 후에 대해 使用料를 支拂하고 그 상표를 붙인 유산균음료 피로비탄을 제조 판매하였다.

그 후 1971년 8월7일 원고 쟈판푸즈(이하 B라 부름)가 설립되어 원고의 본사A 業務가운데 유산균음료 피로비탄의 原液製造販賣를 하게되었다. 그리하여 原告 總本社X는 本件登錄商標를 원고 본사A에게 사용시켜 그 사용료를 取得함을 業으로 하였고 A는 그 상표를 붙인 유산균음료 피로비탄의 普及販賣 및 그 系列企業의 指導育成을 業으로 하며 原告 3社가 中核이 되어 갑·을상표를 붙인 유산균음료 피로비탄을 제조 판매하였으며 1973년 8월까지 周知 認識케 되었다.

피고 (이하 Y라 부름)는 1973년 8월 이후 피오비탄A라는 標章을 붙인 유산균음료를 靑森縣에서 제조 판매하면서 피오비탄A八戶營業所라고 불러왔다.

**5. 判決理由**

X가 甲·乙의 商標權者이며 Y는 피오비탄A라는 標章을 사용함을 認定했고 X가 Y에 대하여 靑森地裁에서 피오비탄A의 標章使用禁止處分命令을 얻은 事實 등을 인정한 다음 X들의 피로비탄과 Y의 피오비탄A가 그 外觀, 呼稱, 觀念에 있어 類似할 뿐더러 出處混同 誤認을 이르킬 行爲라고 인정하였고 또한 『이상에 따르면 Y가 표장 피오비탄A를 前記와 같이 붙인 容器를 사용하여 유산균음료 피오비탄A의 제조 판매를 함은 본건 등록상표 甲乙의 權利를 侵害함과 同時에 원고 본사 및 원고제조의 영업상의 利益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총본사는 商標法 36條, 37條 1號에 따라 원고 본사 및 원고 제조는 不正競爭防止法 1條 1項 1號에 의하여 그 停止請求를 할 수 있다』고 判決하여 主文과 같은 損害賠償을 인정한다.

**6. 解 說**

商標權은 財產權이라고 보는 것이 通常的이며 商標法 精神에 따라 상표의 保護는 상표를 사용하는 者의 業務上 信用維持를 圖謀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본다면 상표권의 本質은 信用保護에 主目的이 있으며 그 신용유지가 需要者에게는 出所誤認混同을 防止한다는 利益에도 結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本質이 반듯이 有體物과 同等한 財產權이라고 斷定하지 않아도 無妨하다. 더우기 신용유지가 재산권이라고 論하는 것이나 排他的 効力을 갖는다는데에 必然的으로 결부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商標所有權者와 非所有權者의 關係로 상표권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상표권자는 다만 登錄한 상표의 소유자, 사용자이며 등록되지 않은 표장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상표권자가 아니고 상표나 표장의 소유자, 사용자임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兩者는 登錄所有者와 非所有者의 對立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單純한 財產權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용에 附隨 또는 個體가 된 名聲으로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本件은 피로비탄과 피오비탄A의 표장의 外觀, 呼稱, 觀念에 있어 類似하다는 判斷에 異論이 없다.